<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19. 7. 3)

NH-Amundi Allset 스마트베타 증권투자신탁[주식] (펀드 코드: AY215)

투자 위험 등급 3등급[다소높은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NH-Amundi Allset 스마트베타 증권투자신탁[주식]**' 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 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NH-Amundi 자산운용(주)는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Ⅰ.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투자목적으로 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집합투자업자	NH-Amundi자산운용		
모집(매출) 총액	이 투자신탁은 모집(매출)총액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모집(판매) 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 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효력발생일	2019. 7. 19	존속 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탁계약기간"이란 투자신탁의 존속 기간을 의미하며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간, 즉 일반적인 용어로 투자자의 "저축만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인터넷 홈페이지(www.nh-amundi.com) 참고		

종류(Class)		A	Ae	C	Ce	Ci	S
가입자격		제한없음	온라인 가입자	제한없음	온라인 가입자	전문투자자, 집합투자기구, 법인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 이내	납입금액의 0.5% 이내	없음	없음	없음	3년 미만 환매 시: 환매금액의 0.15%이내
환매수수료		없음					
보수 (연, %)	판매	0.4	0.2	1	0.5	0.05	0.18
	운용 등	운용: 0.54, 신탁업자: 0.02, 일반사무관리: 0.015					
	기타 비용	0.2026	0.2018	0.2026	0.2022	0.2025	0.1972
	총보수비용	1.1776	0.9768	1.7776	1.2772	0.8275	0.9522
주석사항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환매시, 전환수수료는 전환시 부과되며, 보수는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으로 지급됩니다. (주2) 상기 종류 수익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종류(Cw, C-P1, C-P2, CG, S-P, C-P1e, C-P2e)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 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7.12.23 ~ 2018.12.22]					

	(주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5) 수익자는 증권거래비용, 기타 관리비용 등 총보수·비용 이외에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15시 30분이전: 제 2영업일 기준가 매입 ·15시 30분경과 후: 제3영업일 기준가 매입	환매 방법	·15시 30분 이전: 2영업일 기준가 4영업일 지급 ·15시 30분 경과 후: 3영업일 기준가 4영업일 지급
기준가	·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 = (직전일 투자신탁 자산총액 - 부채총액)/직전일 수익증권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 공시방법 - 서류공시 :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매일 게시 및 공시 - 전자공시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매일 전자 공시		

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투자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투자자산의 가격하락으로 인하여 투자원금손실도 가능합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및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① 포트폴리오 분산 최대화 (Maximum Diversification) 전략

- 벤치마크(비교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 집중화를 피하고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최대한 분산시켜 벤치마크(비교지수)보다 더 높은 기대수익을 추구하는 스마트베타 전략
- 시가총액방식의 벤치마크(비교지수)의 대형주 집중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분산 최대화로 포트폴리오와 종목간의 상관관계를 측정, 분산효과를 최대화하여 위험을 낮추고 수익을 높이는 효과를 추구하는 전략

② 포트폴리오 구성 및 종목 선정전략

- 벤치마크(시가총액지수) 구성종목에 대한 투자비중을 시가총액이 아닌 개별종목의 위험 요소를 감안하여 투자비중 결정
- 개별종목의 위험분산 최대화를 목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축
- 벤치마크(시가총액지수) 구성종목에 대한 투자비중을 시가총액이 아닌 개별종목의 위험요소를 감안하여 투자비중 결정
- 포트폴리오 분산 측정 : 분산비율(Diversification Ratio) 활용
- 분산비율(Diversification Ratio) 최대화가 포트폴리오 구성의 목적
- 분산비율(Diversification Ratio) = 개별종목 위험의 총합 포트폴리오의 위험
- 분산비율이 높다는 것은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변동성이 높거나 낮은 특정종목의 성과에 편중되지 아니한 것을 의미

3. 운용전문인력

구분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2019.07.03 기준)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개)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규모(원)	
책임	김승철	1973	패시브솔루션 본부장	3개	약1,069억원좌	- NH-Amundi 자산운용 퀀트운용본부 (`18.03 ~현재) - 삼성증권 포트폴리오전략팀 (`16.09~ `18.02) - KB 자산운용 인덱스운용2팀 (`09.06~ `16.07)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패시브솔루션 본부에서 운용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당해 투자신탁은 부책임 운용전문인력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상기 운용전문인력의 관리·감독하에 본부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실적 추이
- 연도별 수익률

[단위:%]

기간	최근 1년차 18.01.03 ~ 19.01.02	최근 2년차 17.01.03 ~ 18.01.02	최근 3년차 16.01.03 ~ 17.01.02	최근 4년차 15.01.03 ~ 16.01.02	최근5년차 14.12.23 ~ 15.01.02
Allset 스마트베타 [주식]ClassA	-15.08	14.01	-8.51	13.47	
비교지수	-20.79	25.21	8.31	-1.80	

(주 1) 비교지수 : (1 * [KOSPI200])
(주 2)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종류A(선취판매수수료 부과)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하였고,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 **투자위험은 일반위험, 특수위험, 기타 투자위험 등으로 구분되며, 주요 투자위험 다음과 같음**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집합투자기구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또는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시장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의 직접적인 주 대상이 되는 **주식의 가격 하락 위험에 노출** 됩니다. 또한 **채권 투자에 대한 이자율 위험에 노출** 됩니다. 집합투자재산이 투자되는 국내 주식 및 채권은 국내외의 경제 상황, 이자율, 거시 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그 가치가 변화하고 또한 개별 기업의 이익 현황, 미래 성장 가능성, 영업 환경 및 재무 상황에 따라 그 가치가 등락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시장 위험 요소는 개별 주권 및 채권의 가격을 등락하게 만들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집합투자재산의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위험관리와 초과수익을 위해 선물·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에 투자 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파생상품은 적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효과)로 인해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 보다 높은 위험을 가집니다. 따라서 파생상품의 투자를 통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투자 대상의 신용 상태가 변화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국내 투자의 경우 투자대상이 국가 및 정부가 발행한 국공채의 경우 신용위험은 매우 작습니다. 단, 일반 기업 등에서 발행한 채권의 경우 신용위험(부도위험 및 신용등급 하락위험)에 노출 됩니다. 이러한 신용위험은 집합투자재산의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추적오차위험	이 투자신탁의 운용전략의 특성 상 종목별 투자비중이 벤치마크(비교지수)와 다르므로 추적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

※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매년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수익률 표준편차)에 의한 등급으로,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위험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매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벤치마크)인 "KOSPI200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에 주로 투자합니다. 집합투자업자인 NH-Amundi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 관리를 위해 편입종목 의 신용위험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KOSPI200 구성종목과 운용전략상 투자비중이 차이가 나므로 비교지수(벤치마크)와의 추적오차는 크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위험관리는 수행하지 아니합니다.

※ 투자위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참고

Ⅲ.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 일반법인 15.4%)을 부담합니다.
-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6.6~41.8%, 지방소득세 포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연금저축계좌의 세제(Class S-P, C-P1, C-P1e 수익자에 한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별도의 과세 규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부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Class C-P2, C-P2e 수익자에 한함):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 투자신탁으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신탁은 2017년 2월 27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환매를 청구하는 해당연도에 과세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 및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과세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참고

2.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 재무정보

◇ 투자설명서 참고

[집합투자기구공시정보안내]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집합투자업자(www.nh-amundi.com) 및 판매회사홈페이지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결산서류):금융감독원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자산운용보고서:한국금융투자협회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홈페이지(www.nh-amundi.com)
수시공시:한국금융투자협회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홈페이지(www.nh-amundi.com)

투자 위험 등급 3 등급[다소높은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NH-Amundi 자산운용주식회사는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NH-Amundi Allset 스마트베타 증권투자신탁[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NH-Amundi Allset 스마트베타 증권투자신탁[주식]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NH-Amundi Allset 스마트베타 증권투자신탁[주식]**

(종류)클래스	Class A	Class Ae	Class C	Class Ce	Class Ci	Class Cw	Class S
펀드코드	AY216	AY217	AY218	AY219	AY2201	AY221	AY222
(종류)클래스	**Class C-P1 (연금저축)**	**Class C-P2 (퇴직연금)**	**Class AG**	**Class CG**	**Class S-P**	**Class C-P1e (연금저축)**	**Class C-P2e (퇴직연금)**
펀드코드	AY223	AY224	BP096	BO875	BU463	BU464	BU465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NH-Amundi 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4. 작 성 기 준 일 : 2019 년 7 월 3 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9 년 7 월 19 일
6. 모집(매출)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모집(매출)총액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이 투자신탁은 2014 년 12 월 22 일부터 모집을 개시하며 개방형으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각 판매회사

   ※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nh-amundi.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본 집합투자기구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이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판단을 내리기 전에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합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신청시의 예상 환매금액보다 실제 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목 차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0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10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10
3. 모집예정금액 10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0
5. 인수에 관한 사항 10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10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11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11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12
4. 집합투자업자 12
5. 운용전문인력 12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13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14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5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8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20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22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25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26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29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33
1. 재무정보 33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25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25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43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43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45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45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48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48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4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37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37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사항 38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38

용 어 풀 이 57

(작성기준일 :2019. 7. 3)

NH-Amundi Allset 스마트베타 증권투자신탁[주식] (펀드 코드: AY215)

투자 위험 등급 3등급[다소높은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NH-Amundi Allset 스마트베타 증권투자신탁[주식]**' 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 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NH-Amundi 자산운용(주)는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Ⅰ.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투자목적으로 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집합투자업자	NH-Amundi자산운용		
모집(매출) 총액	이 투자신탁은 모집(매출)총액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모집(판매) 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 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효력발생일	2019. 7. 19	존속 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탁계약기간"이란 투자신탁의 존속 기간을 의미하며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간, 즉 일반적인 용어로 투자자의 "저축만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인터넷 홈페이지(www.nh-amundi.com) 참고		

종류(Class)		A	Ae	C	Ce	Ci	S
가입자격		제한없음	온라인 가입자	제한없음	온라인 가입자	전문투자자, 집합투자기구, 법인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 이내	납입금액의 0.5% 이내	없음	없음	없음	3년 미만 환매 시: 환매금액의 0.15%이내
환매수수료		없음					
보수 (연, %)	판매	0.4	0.2	1	0.5	0.05	0.18
	운용 등	운용: 0.54, 신탁업자: 0.02, 일반사무관리: 0.015					
	기타 비용	0.2026	0.2018	0.2026	0.2022	0.2025	0.1972
	총보수비용	1.1776	0.9768	1.7776	1.2772	0.8275	0.9522
주석사항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는 환매시, 전환수수료는 전환시 부과되며, 보수는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으로 지급됩니다. (주2) 상기 종류 수익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종류(Cw, C-P1, C-P2, CG, S-P, C-P1e, C-P2e)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 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7.12.23 ~ 2018.12.22]					

	(주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5) 수익자는 증권거래비용, 기타 관리비용 등 총보수·비용 이외에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15시 30분이전: 제 2영업일 기준가 매입 ·15시 30분경과 후: 제3영업일 기준가 매입	환매 방법	·15시 30분 이전: 2영업일 기준가 4영업일 지급 ·15시 30분 경과 후: 3영업일 기준가 4영업일 지급
기준가	·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 = (직전일 투자신탁 자산총액 - 부채총액)/직전일 수익증권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 공시방법 - 서류공시 :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매일 게시 및 공시 - 전자공시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매일 전자 공시		

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투자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투자자산의 가격하락으로 인하여 투자원금손실도 가능합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및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① 포트폴리오 분산 최대화 (Maximum Diversification) 전략

- 벤치마크(비교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 집중화를 피하고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최대한 분산시켜 벤치마크(비교지수)보다 더 높은 기대수익을 추구하는 스마트베타 전략
- 시가총액방식의 벤치마크(비교지수)의 대형주 집중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분산 최대화로 포트폴리오와 종목간의 상관관계를 측정, 분산효과를 최대화하여 위험을 낮추고 수익을 높이는 효과를 추구하는 전략

② 포트폴리오 구성 및 종목 선정전략

- 벤치마크(시가총액지수) 구성종목에 대한 투자비중을 시가총액이 아닌 개별종목의 위험 요소를 감안하여 투자비중 결정
- 개별종목의 위험분산 최대화를 목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축
- 벤치마크(시가총액지수) 구성종목에 대한 투자비중을 시가총액이 아닌 개별종목의 위험요소를 감안하여 투자비중 결정
- 포트폴리오 분산 측정 : 분산비율(Diversification Ratio) 활용
- 분산비율(Diversification Ratio) 최대화가 포트폴리오 구성의 목적
- 분산비율(Diversification Ratio) = 개별종목 위험의 총합 포트폴리오의 위험
- 분산비율이 높다는 것은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변동성이 높거나 낮은 특정종목의 성과에 편중되지 아니한 것을 의미

3. 운용전문인력

구분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2019.07.03 기준)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개)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규모(원)	
책임	김승철	1973	패시브솔루션 본부장	3개	약1,069억원좌	- NH-Amundi 자산운용 퀀트운용본부 (`18.03 ~현재) - 삼성증권 포트폴리오전략팀 (`16.09~ `18.02) - KB 자산운용 인덱스운용2팀 (`09.06~ `16.07)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패시브솔루션 본부에서 운용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당해 투자신탁은 부책임 운용전문인력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상기 운용전문인력의 관리·감독하에 본부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실적 추이
- 연도별 수익률

[단위:%]

기간	최근 1년차 18.01.03 ~ 19.01.02	최근 2년차 17.01.03 ~ 18.01.02	최근 3년차 16.01.03 ~ 17.01.02	최근 4년차 15.01.03 ~ 16.01.02	최근5년차 14.12.23 ~ 15.01.02
Allset 스마트베타 [주식]ClassA	-15.08	14.01	-8.51	13.47	
비교지수	-20.79	25.21	8.31	-1.80	

(주 1) 비교지수 : (1 * [KOSPI200])
(주 2)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종류A(선취판매수수료 부과)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하였고,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 **투자위험은 일반위험, 특수위험, 기타 투자위험 등으로 구분되며, 주요 투자위험 다음과 같음**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집합투자기구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또는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시장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의 직접적인 주 대상이 되는 **주식의 가격 하락 위험에 노출** 됩니다. 또한 **채권 투자에 대한 이자율 위험에 노출** 됩니다. 집합투자재산이 투자되는 국내 주식 및 채권은 국내외의 경제 상황, 이자율, 거시 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그 가치가 변화하고 또한 개별 기업의 이익 현황, 미래 성장 가능성, 영업 환경 및 재무 상황에 따라 그 가치가 등락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시장 위험 요소는 개별 주권 및 채권의 가격을 등락하게 만들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집합투자재산의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위험관리와 초과수익을 위해 선물·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에 투자 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파생상품은 적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효과)로 인해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 보다 높은 위험을 가집니다. 따라서 파생상품의 투자를 통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투자 대상의 신용 상태가 변화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국내 투자의 경우 투자대상이 국가 및 정부가 발행한 국공채의 경우 신용위험은 매우 작습니다. 단, 일반 기업 등에서 발행한 채권의 경우 신용위험(부도위험 및 신용등급 하락위험)에 노출 됩니다. 이러한 신용위험은 집합투자재산의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추적오차위험	이 투자신탁의 운용전략의 특성 상 종목별 투자비중이 벤치마크(비교지수)와 다르므로 추적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

※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매년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수익률 표준편차)에 의한 등급으로,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위험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매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벤치마크)인 "KOSPI200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에 주로 투자합니다. 집합투자업자인 NH-Amundi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 관리를 위해 편입종목 의 신용위험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KOSPI200 구성종목과 운용전략상 투자비중이 차이가 나므로 비교지수(벤치마크)와의 추적오차는 크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위험관리는 수행하지 아니합니다.

※ 투자위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참고

Ⅲ.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 일반법인 15.4%)을 부담합니다.
-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6.6~41.8%, 지방소득세 포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연금저축계좌의 세제(Class S-P, C-P1, C-P1e 수익자에 한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별도의 과세 규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부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Class C-P2, C-P2e 수익자에 한함):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 투자신탁으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신탁은 2017년 2월 27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환매를 청구하는 해당연도에 과세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 및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과세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참고

2.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 재무정보

◇ 투자설명서 참고

[집합투자기구공시정보안내]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집합투자업자(www.nh-amundi.com) 및 판매회사홈페이지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결산서류):금융감독원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자산운용보고서:한국금융투자협회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홈페이지(www.nh-amundi.com)
수시공시:한국금융투자협회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홈페이지(www.nh-amundi.com)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NH-Amundi Allset 스마트베타 증권투자신탁[주식]

(종류)클래스	Class A	Class Ae	Class C	Class Ce	Class Ci	Class Cw	Class S
펀드코드	AY216	AY217	AY218	AY219	AY2201	AY221	AY222
(종류)클래스	**Class C-P1 (연금저축)**	**Class C-P2 (퇴직연금)**	**Class AG**	**Class CG**	**Class S-P**	**Class C-P1e (연금저축)**	**Class C-P2e (퇴직연금)**
펀드코드	AY223	AY224	BP096	BO875	BU463	BU464	BU465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이 투자신탁은 모집(매출)총액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모집규모 및 모집(판매)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운용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모집의 내용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하고자 하는 투자신탁의 종류(클래스) 및 종류별(Class 별) 가입자격은 제 2 부의 내용 중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은 종류별로 모집규모가 정해지지 아니하고 모집이 가능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모집의 규모 및 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집니다.
모집방법 및 내용	이 투자신탁의 모집(매출)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 부의 내용 중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집기간	이 투자신탁은 2014 년 12 월 22 일부터 모집을 개시하며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됩니다
모집장소	판매회사의 영업점(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nh-amundi.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NH- Amundi Allset 스마트베타 증권투자신탁[주식]

(종류)클래스	Class A	Class Ae	Class C	Class Ce	Class Ci	Class Cw	Class S
펀드코드	AY216	AY217	AY218	AY219	AY2201	AY221	AY222
(종류)클래스	**Class C-P1 (연금저축)**	**Class C-P2 (퇴직연금)**	**Class AG**	**Class CG**	**Class S-P**	**Class C-P1e (연금저축)**	**Class C-P2e (퇴직연금)**
펀드코드	AY223	AY224	BP096	BO875	BU463	BU464	BU465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일 시	주 요 내 용
2014. 12. 21	최초설정(예정)
2015. 7. 7	Class C-P2(퇴직연금) 수익증권 환매수수료 삭제
2015. 10.26	환매수수료 삭제
2016. 01.15	책임운용력 변경
2016. 5.3	집합투자기구 명칭 변경 (NH-CA Allset 스마트베타+ 증권투자신탁[주식] → NH-Amundi Allset 스마트베타 증권투자신탁[주식])
2016. 7.2	투자위험 등급 분류 체계 개편 내용 반영
2016.7.30	판매 및 환매 기준시간 변경
2017.2.27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투자신탁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 유보)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연금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투자대상자산 신용평가등급 관련 내용 보완 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및 자구정정
2017.04.29	클린클래스(AG, CG Class) 추가
2017.07.28	클래스 추가 (S-P, C-P1e, C-P2e)
2017.11.24	운용전문인력 변경(김병규 → 이현열) 운용현황 및 운용실적 갱신
2018.01.10	설정 후 3년 경과에 따른 변동성(표준편차)사항 반영 및 위험등급 변경(2등급 → 3등급, 12.05%)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2019.01.09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설정 후 3년 경과에 따른 변동성(표준편차)사항 반영(12.05% → 11.43%, 3등급 유지)
2019.04.29	책임 운용전문인력 변경(이현열→김주인)

2019.07.19	책임 운용전문인력 변경(김주인→김승철)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에 의하여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5 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1)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NH-Amundi 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 길 2 (여의도동, 농협문화복지재단빌딩 10 층) Tel. 02-368-3600 (www.nh-amundi.com)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1) 책임운용전문인력

구분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2019.07.03 기준)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개)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규모(원)	
책임	김승철	1973	패시브솔루션 본부장	3개	약1,069억원좌	- NH-Amundi 자산운용 퀀트운용본부 (`18.03 ~현재) - 삼성증권 포트폴리오전략팀 (`16.09~ `18.02) - KB 자산운용 인덱스운용2팀 (`09.06~ `16.07)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패시브솔루션 본부에서 운용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당해 투자신탁은 부책임 운용전문인력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상기 운용전문인력의 관리·감독하에 본부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운용규모: 해당사항 없음

(2)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일시	변경 전	변경 후
2016. 01. 15	**서우석** <퀀트운용본부장>	**김병규** < 퀀트&글로벌 솔루션 본부장 >
2017. 11. 24	**김병규** <퀀트&글로벌 솔루션 본부장>	**이현열** <패시브 솔루션 본부 대리>
2019. 04. 29	**이현열** < 패시브솔루션 본부 대리>	**김주인** <패시브운용팀장>
2019. 07. 19	**김주인**	**김승철**

	<패시브운용팀장>	<패시브솔루션 본부>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관련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2) 종류형 구조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입니다.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설정일
Class A	제한없음(선취판매수수료 징구)	2015-01-05
Class Ae	온라인 가입자(선취판매수수료 징구)	2015-01-19
Class C	제한없음	2015-01-05
Class Ce	온라인 가입자	2015-01-06
Class Ci	특정금전신탁,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보험업법상의 특별계정,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법 시행령 제 10 조에 따른 전문투자자 또는 50 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전용	2014-12-23
Class Cw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2015-08-18
Class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2015-01-29
Class 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자(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Class C-P1(연금저축)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경우	2015-01-05
Class C-P1e(연금저축)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로서, 온라인(On-Line)계좌를 이용하여 이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2017-08-30
Class C-P2(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인 경우	2015-02-04

Class C-P2e(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로서, 온라인(On-Line)계좌를 이용하여 이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2017-11-21
Class A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수익자(선취판매수수료 징구)	-
Class C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수익자	-

<종류별 수수료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클래스	수수료			보수 (연간, %)			
	선취판매	후취판매	환매	판매	운용	신탁	사무관리
Class A	납입금액의 1%이내	-	없음	0.4	0.54	0.02	0.015
Class Ae	납입금액의 0.5%이내	-		0.2			
Class C	-	-		1			
Class Ce	-	-		0.5			
Class Ci	-	-		0.05			
Class Cw	-	-		0			
Class S	-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0.18			
Class S-P	-	-		0.144			
Class C-P1 (연금저축)	-	-		0.7			
Class C-P1e (연금저축	-	-		0.35			
Class C-P2 (퇴직연금)	-	-		0.68			
Class C-P2e (퇴직연금)	-	-		0.34			
Class AG	납입금액의 0.5%이내	-		0.22			
Class CG	없음	-		0.55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투자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투자자산의 가격하락으로 인하여 투자원금손실도 가능합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및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의 종류	투자한도	투자대상 조건
①주식	60% 이상	법제 4 조제 4 항에 의한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 법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②채권	40% 이하	법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③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④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법시행령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및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서 취득 시 신용등급이 A2- 이상인 것
⑤주식및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10%이하	법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⑥집합투자증권 등	30% 이하	법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법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제 189 조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
⑦환매조건부 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증권의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이하	
⑨증권의 차입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⑩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방법
⑪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1.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 ~ ⑥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 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 일 이내로 함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 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회계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계약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라.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 ~ ⑥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⑦ ~ ⑨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 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3. 투자대상 자산의 신용등급이 상기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투자제한 내용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동일종목 투자제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단,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법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은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나. 다음과 같은 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1)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제가목의 것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2) 파생결합증권 (3)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4)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5)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7)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시가총액비중(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 매월 말일을 기준을 산정하며 그 다음 1개월간 적용)이 10%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 하는 행위
3.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나.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파생상품거래	가.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나.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라.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및 투자자의 보호 및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염려가 없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다. 다.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제10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6.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7. 금전의 차입	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 법제 235 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법제 191 조 및 제 201 조제 4 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나. "가"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가"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8. 금전의 대여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시행령제 345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 기관에 대한 30 일 이내의 단기대출은 할 수 있다.
9.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10. 투자한도 초과	가.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발행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등의 사유로 구분 2 내지 5(단, 구분 4 의 가목은 제외)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나. 구분 2 본문·구분 4 의 나, 다, 라· 구분 5(단, 구분 5 의 다 내지 바목은 제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 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가. 투자대상의 ②채권 및 ④어음"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초하락일로부터 3 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3 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주로 국내주식에 투자하며 투자신탁의 벤치마크(비교지수)인 KOSPI200 지수구성종목에 투자합니다. 단, 투자신탁의 포트폴리오 구축 시, KOSPI200 구성종목의 투자비중을 위험요소를 감안하는 "포트폴리오 분산 최대화 (Maximum Diversification) 전략"을 활용하여 KOSPI200 지수 성과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① 포트폴리오 분산 최대화 (Maximum Diversification) 전략

- 벤치마크(비교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 집중화를 피하고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최대한 분산시켜 벤치마크(비교지수)보다 더 높은 기대수익을 추구하는 스마트베타 전략

※ 베타(Beta)

- 개별증권 또는 포트폴리오의 수익이 증권시장 전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해 변동하는가를 나타내는 수치
- 종합주가지수가 1% 변할 때 개별주가(또는 지수)가 몇% 변하는가를 나타내는 수치
- 베타가 1인 종목의 주가는 종합주가지수와 동일하게 움직임
- 베타가 1보다 큰 것은 시장수익률의 변동보다 더 크게 반응
- 시장수익률 대용치로 KOSPI 또는 KOSPI200 지수를 주로 사용

※ 스마트베타(Smart Beta) 전략

- 시장수익률의 대용치인 KOSPI 또는 KOSPI200 지수는 시가총액방식으로 산출되는 지수
  시가총액방식: 지수구성종목의 투자비중을 시가총액(발행주수 X 가격)으로 결정하여 가격을 산출함에 따라 대형주 비중이 높고, 위험요인도 대형주에 집중
- 일반적으로 스마트베타 전략은 대형주의 투자비중을 줄이고 종목간 비중을 고르게 구성하는 다양한 전략을 통칭

・시가총액방식의 벤치마크(비교지수)의 대형주 집중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분산 최대화로 포트폴리오와 종목간의 상관관계를 측정, 분산효과를 최대화하여 위험을 낮추고 수익을 높이는 효과를 추구하는 전략

② 포트폴리오 구성 및 종목 선정전략

- 벤치마크(시가총액지수) 구성종목에 대한 투자비중을 시가총액이 아닌 개별종목의 위험 요소를 감안하여 투자비중 결정
- 개별종목의 위험분산 최대화를 목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축
- 벤치마크(시가총액지수) 구성종목에 대한 투자비중을 시가총액이 아닌 개별종목의 위험요소를 감안하여 투자비중을 결정
- 포트폴리오 분산 측정 : 분산비율(Diversification Ratio) 활용
  - 분산비율(Diversification Ratio) 최대화가 포트폴리오 구성의 목적
  - 분산비율(Diversification Ratio) = 개별종목 위험의 총합 ÷ 포트폴리오의 위험
  - 분산비율이 높다는 것은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변동성이 높거나 낮은 특정종목의 성과에 편중되지 아니한 것을 의미

※ 스마트베타 전략은 해외 집합투자업자로부터의 자문을 활용하여 운용될 수 있습니다.

(2)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벤치마크)인 "KOSPI200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에 주로 투자합니다. 집합투자업자인 NH-Amundi 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 관리를 위해 편입종목의 신용위험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KOSPI200 구성종목과 운용전략상 투자비중이 차이가 나므로 비교지수(벤치마크)와의 추적오차는 크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위험관리는 수행하지 아니합니다.

※ 집합투자업자인 NH-Amundi 자산운용㈜는 상기의 위험관리 계획을 수행하나, 이러한 위험관리계획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하지는 아니합니다.

(3)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벤치마크)

- KOSPI 200 (100%)

※ 상기의 비교지수(벤치마크)는 국내 주식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특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벤치마크는 운용상의 성과비교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이 투자신탁에서 구사하는 스마트베타 전략의 특성 상 종목별 투자비중이 벤치마크와 상이함에 따라 추적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 시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의 비교지수(벤치마크)는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변경된 비교지수(벤치마크)와 변경 사유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4) 적극적인 매매전략의 구사여부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매매전략은 그렇지 아니한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비용(매매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신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상기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계획은 이 투자신탁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들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수익구조

(1)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로서 주식 등에 대한 투자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및 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한 주식의 가치가 상승할 경우,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반대로 가치가 하락할 경우,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특히,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연관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예금을 판매하는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벤치마크)의 구성종목에 투자하되 구성종목 비중을 상이하게 조절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의 특성 상 일반 주식형 펀드와 비교하여 비교지수(벤치마크)와 추적오차가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 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투자신탁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집합투자기구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또는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시장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의 직접적인 주 대상이 되는 **주식의 가격 하락 위험에 노출** 됩니다. 또한 **채권 투자에 대한 이자율 위험에 노출** 됩니다. 집합투자재산이 투자되는 국내 주식 및 채권은 국내외의 경제 상황, 이자율, 거시 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그 가치가 변화하고 또한 개별 기업의 이익 현황, 미래 성장 가능성, 영업 환경 및 재무 상황에 따라 그 가치가 등락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시장 위험 요소는 개별 주권 및 채권의 가격을 등락하게 만들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집합투자재산의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위험관리와 초과수익을 위해 선물·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에 투자 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파생상품은 적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효과)로 인해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 보다 높은 위험을 가집니다. 따라서 파생상품의 투자를 통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투자 대상의 신용 상태가 변화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국내 투자의 경우 투자대상이 국가 및 정부가 발행한 국공채의 경우 신용위험은 매우 작습니다. 단, 일반 기업 등에서 발행한 채권의 경우 신용위험(부도위험 및 신용등급 하락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신용위험은 집합투자재산의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위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운용 및 투자자의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추적오차위험	이 투자신탁의 운용전략의 특성 상 종목별 투자비중이 벤치마크(비교지수)와 다르므로 추적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의 규모를 감안할 때 집합투자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 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가 연기되거나 일정기간 환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 제2부 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순자산 가치 변동 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적용일이 다르고 환매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소요됨에 따라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적용일까지 기간 동안의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해지 위험	다음과 각 호의 경우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임의 해지)**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 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특히, 상기 3, 4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의무 해지)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의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수익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측정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변동성은 ***11.43%***로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다소 높은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분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등급	1등급 (매우높은위험)	2등급 (높은위험)	3등급 (다소높은위험)	4등급 (보통위험)	5등급 (낮은위험)	6등급 (매우낮은위험)
표준편차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매년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수익률 표준편차)에 의한 등급으로,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위험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매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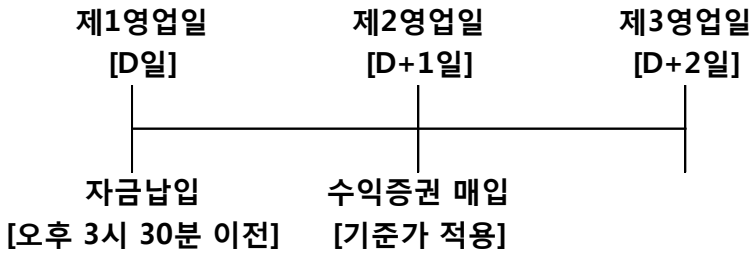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일에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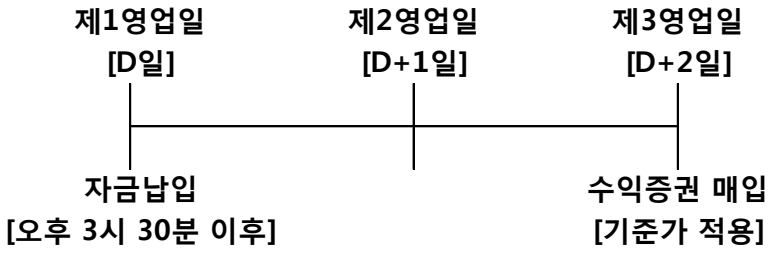
(2) 매입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가) **오후 3 시 30 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D 일)로부터 2 영업일(D+1 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나) **오후 3 시 30 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D 일)로부터 제 3 영업일(D+2 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 원으로 합니다.

(3) 종류별 모집제한

이 투자신탁의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Class)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펀드코드	가입자격
Class A	AY216	제한없음(선취판매수수료 징구)
Class Ae	AY217	온라인 전용(선취판매수수료 징구)
Class C	AY218	제한없음
Class Ce	AY219	온라인 전용
Class Ci	AY220	특정금전신탁,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보험업법상의 특별계정,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법 시행령 제 10 조에 따른 전문투자자 또는 50 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Class Cw	AY221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Class S	AY222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Class S-P	BU463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자(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Class C-P1(연금저축)	AY223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경우
Class C-P1e(연금저축)	BU464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로서, 온라인(On-Line)계좌를 이용하여 이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Class C-P2(퇴직연금)	AY22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인 경우
Class C-P2e(퇴직연금)	BU46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로서, 온라인(On-Line)계좌를 이용하여 이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Class AG	BP096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수익자(선취판매수수료 징구)
Class CG	BO875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 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수익자

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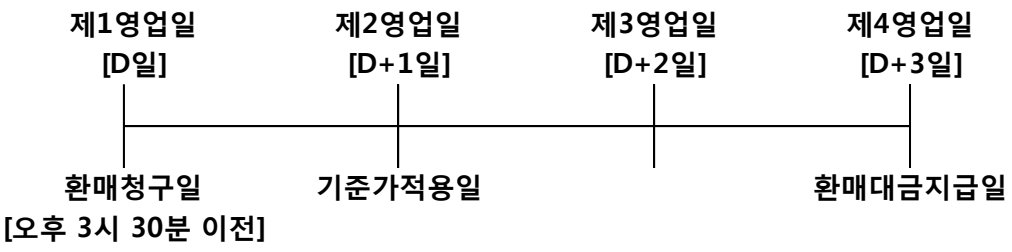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일의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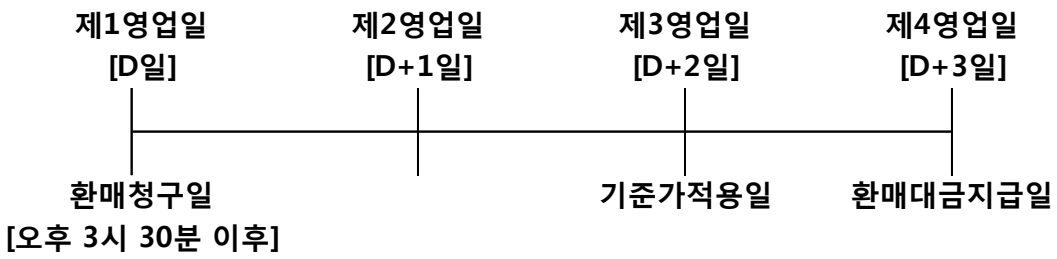
(가) **오후 3 시 30 분 이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D 일)로부터 제 2 영업일(D+1 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4 영업일(D+3 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3 시 30 분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D 일)로부터 제 3 영업일(D+2 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4 영업일(D+3 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상기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증권의 거래소가 예상치 못한 사유(천재지변 등)로 휴장될 경우 환매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5)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 시 30 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나) 법령 또는 볍령에 의한 명령 등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6)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매연기사유>

1.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7)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5 시 30 분[오후 3 시 30 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 시 30 분[오후 3 시 30 분]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7 시[오후 5 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다. 전환: 해당사항 없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주기	매영업일 공시합니다.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 영업점에 공고·게시 또는 집합투자업자 인터넷 홈페이지(www.nh-amundi.com) 및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게시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펀드간 판매보수가 차등 적용되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각 종류간에 기준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 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공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회(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
-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3)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의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합니다.

구 분	내 용
상장증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해외증권시장을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장내파생상품 및 해외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
채무증권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2.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일 현재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관련법령에 따라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아래의 자가 제공한 가격 (1) 채권평가회사 (2)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3) 신용평가업자 (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5)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6) (1)~(5)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자 (7) (1)~(6)에 준하는 외국인 4. 환율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 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전환수수료	환매수수료
Class A	납입금액의 1%이내	-	-	없음
Class Ae	납입금액의 0.5%이내	-	-	
Class C	-	-	-	
Class Ce	-	-	-	
Class Ci	-	-	-	
Class Cw	-	-	-	
Class S	-	3년미만 환매 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	
Class S-P	-	-	-	
Class C-P1 (연금저축)	-	-	-	
Class C-P1e (연금저축)	-	-	-	
Class C-P2 (퇴직연금)	-	-	-	
Class C-P2e (퇴직연금)	-	-	-	
Class AG	납입금액의 0.5%이내	-	-	
Class CG	-	-	-	
부과시기	매입시	환매시	전환시	환매시

※ 선취판매수수료는 Class A 의 경우 납입금액의 1% 범위 이내에서, Class Ae, AG 의 경우 납입금액의 0.5% 이내에서 투자신탁 판매회사의 재량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 Class S 의 후취판매수수료 관련 사항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후취판매수수료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른 목적식 투자고객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후취판매수수료는 상기의 범위 내에서 투자신탁 판매회사의 재량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 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관리 회사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증권거래 비용
Class A	0.54	0.4	0.02	0.015	0.2026	1.1776	0.0255
Class Ae	0.54	0.2	0.02	0.015	0.2018	0.9768	0.0261
Class C	0.54	1	0.02	0.015	0.2026	1.7776	0.0256
Class Ce	0.54	0.5	0.02	0.015	0.2022	1.2772	1.0772

Class Ci	0.54	0.05	0.02	0.015	0.2025	0.8275	0.0258
Class Cw	0.54	0	0.02	0.015	0.1986	0.7736	0.0240
Class S	0.54	0.18	0.02	0.015	0.1972	0.9522	0.0254
Class S-P	0.54	0.144	0.02	0.015	0.0000	0.7190	0.0228
Class C-P1 (연금저축)	0.54	0.7	0.02	0.015	0.2025	1.4775	0.0255
Class C-P1e (연금저축)	0.54	0.35	0.02	0.015	0.1987	1.1237	0.0266
Class C-P2 (퇴직연금)	0.54	0.68	0.02	0.015	0.2025	1.4575	0.0266
Class C-P2e (퇴직연금)	0.54	0.34	0.02	0.015	0.1995	1.1145	0.0275
Class AG	0.54	0.22	0.02	0.015	0.2026	0.9976	1.0772
Class CG	0.54	0.55	0.02	0.015	0.2026	1.3276	1.0772
지급시기	매3개월 후급,투자신탁의 일부 또는 전부해지 시				사유발생시	-	사유발생시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7.12.23 ~ 2018.12.2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7.12.23 ~ 2018.12.2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신고서의 작성 시점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Class)의 비용(기타비용, 총보수· 비용 등)의 경우 설정된 종류(Class)의 값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구분		1 년후	3 년후	5 년후	10 년후
A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99	408	633	1,280
Ae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29	297	479	1,006
C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62	502	865	1,887
Ce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10	344	597	1,319
Ci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64	201	351	785
Cw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59	184	321	720
S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77	241	420	936

S-P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53	167	291	653
C-P1(연금저축)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31	408	705	1,550
C-P1e(연금저축)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95	296	513	1,140
C-P2(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29	401	694	1,527
C-P2e(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94	293	508	1,129
AG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52	366	599	1,265
CG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36	423	732	1,607

※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종류 A] 수익증권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의 1%]를 가정하여 산출하고, [종류 Ae, AG] 수익증권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의 0.5%]를 가정하여 산출합니다. 따라서 판매회사별로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 실제 금액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종류 A 와 종류 C] 수익증권의 총 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1 년 6 개월]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Class S 수익증권의 경우 보유기간을 3 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산정하였으며, 후취판매수수료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신고서의 작성 시점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투자신탁 종류(Class)의 투자기간별 수수료·비용 예시의 경우 이 투자신탁과 유사한 투자신탁, 또는 설정된 투자신탁 종류(Class)의 추정치로 산출하였습니다.

* 신탁보수는 신탁재산의 순자산가치(NAV)변동에 따라 다소 유동적입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종료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법 제 240 조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매매이익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2017 년 2 월 27 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익자는 (1)에 의하여 분배되는 이익금을 금전 등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3)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수익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 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 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이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과표기준가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이란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신탁재산의 운용수익 중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증권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 과세대상 수익만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판매회사의 영업점,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8%, 주민세 3.8%)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Class C-P1, C-P1e, S-P 가입자에 한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 시 연금소득(연금수령 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 외 수령 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 년 이상, 연 1,800 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 세 이후 10 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다만, 종합소득금액 및 근로소득에 따라 세액공제가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200 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
해지가산세	없음
특별 중도해지 (연금외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 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특별 중도해지 사유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5)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Class C-P2, C-P2e,가입자에 한함)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연금계좌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및 근로소득에 따라 세액공제가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

다만,「소득세법」제59조의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4기(2017.12.23 - 2018.12.22)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3기(2016.12.23 - 2017.12.22)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2기(2015.12.23 - 2016.12.22)	삼회회계법인	적정

가. 요약재무정보

Allset 스마트베타 [주식] [단위 : 원]

통합 대차대조표			
항 목	제 4기	제 3기	제 2기
	(2018.12.22)	(2017.12.22)	(2016.12.22)
운용자산	19,524,871,100	24,174,174,137	48,794,424,575
증권	19,313,687,980	23,911,282,820	48,222,278,315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211,183,120	262,891,317	572,146,260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1,421,833	77,602,140	81,046,339
자산총계	19,526,292,933	24,251,776,277	48,875,470,914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49,492,313	218,700,241	274,398,025
부채총계	49,492,313	218,700,241	274,398,025
원본	21,842,044,156	23,558,200,070	53,564,488,507
수익조정금	-215,201,401	-3,583,080,315	52,466,872
이익잉여금	-2,150,042,135	4,057,956,281	-5,015,882,490
자본총계	19,476,800,620	24,033,076,036	48,601,072,889

Allset 스마트베타 [주식] [단위 : 원, %]

통합 손익계산서			
항 목	제 4기	제 3기	제 2기
	(2017.12.23 - 2018.12.22)	(2016.12.23 - 2017.12.22)	(2015.12.23 - 2016.12.22)
운용수익	-2,523,917,570	6,672,297,726	-4,498,713,233
이자수익	3,246,267	2,947,137	6,972,718
배당수익	423,643,832	891,515,416	1,075,995,824
매매/평가차익(손)	-2,950,807,669	5,777,835,173	-5,581,681,775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172,653,364	317,806,235	382,642,842
관련회사 보수	172,653,364	317,806,235	382,642,842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46,302,970	97,304,147	118,152,302
당기순이익	-2,742,873,904	6,257,187,344	-4,999,508,377
매매회전율	55.44	100.35	94.73

(주 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 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 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 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 2) "가. 요약재무정보상의 대차대조표"와 "나. 대차대조표"의 자본총계는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수 있습니다.

(주 3) "가. 요약재무정보상의 손익계산서"와 "다.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수 있습니다.

(주 4)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대차대조표

대 차 대 조 표

[단위:원]

과 목	제4기(2018.12.22) 금 액		제3기(2017.12.22) 금 액		제2기(2016.12.22)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211,183,120		262,891,317		572,146,260
1. 현금및현금성자산	211,183,120		262,891,317		572,146,260	
2. 예치금						
3. 증거금						
대출채권						
1. 콜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19,313,687,980		23,911,282,820		48,222,278,315
1. 지분증권	19,313,687,980		23,911,282,820		48,222,278,315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1.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1,421,833		77,602,140		81,046,339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998,980		1,696,901		1,703,143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327,300		134,629		327,427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95,553		75,770,610		79,015,769	
6. 기타자산						
7.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19,526,292,933		24,251,776,277		48,875,470,914
부 채						
운 용 부 채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49,492,313		218,700,241		274,398,025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191,011		151,367,467		157,893,188	
4. 수수료미지급금	39,717,441		48,954,709		92,212,354	
5. 기타미지급금						
6. 기타부채	9,583,861		18,378,065		24,292,483	
부 채 총 계		49,492,313		218,700,241		274,398,025
자 본						
1. 원 본	21,842,044,156		23,558,200,070		53,564,488,507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2,365,243,536		474,875,966		-4,963,415,618	
(발행좌수 당기: 21,842,044,156 좌	이익잉여금	-2,150,042,135		4,057,956,281		-5,015,882,490
전기: 23,558,200,070 좌	수익조정금	-215,201,401		-3,583,080,315		52,466,872
전전기: 53,564,488,507 좌)						
(기준가격 당기: 899.84 원						
전기: 1,019.09 원						
전전기: 916.48 원)						
자 본 총 계		19,476,800,620		24,033,076,036		48,601,072,889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9,526,292,933		24,251,776,277		48,875,470,914

다. 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

[단위:원]

과 목	제4기(2017.12.23-2018.12.22) 금 액		제3기(2016.12.23-2017.12.22) 금 액		제2기(2015.12.23-2016.12.22)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426,890,099		894,462,553		1,082,968,542
1. 이 자 수 익	3,246,267		2,947,137		6,972,718	
2. 배당금수익	423,643,832		891,515,416		1,075,995,824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1,466,771,778		7,678,918,630		4,703,375,764
1. 지분증권매매차익	1,445,682,913		5,624,363,119		4,652,975,654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2,010,683,813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21,088,865		43,871,698		50,400,110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4,417,579,447		1,901,083,457		10,285,057,539
1. 지분증권매매차손	1,214,787,809		1,901,079,178		10,284,963,001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3,202,785,271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6,367		4,279		94,538	
8. 기타거래손실						
운 용 비 용		218,956,334		415,110,382		500,795,144
1. 운용수수료	71,337,362		150,435,392		179,723,190	
2. 판매수수료	97,121,235		158,522,948		192,348,928	
3. 수탁수수료	4,194,767		8,847,895		10,570,724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46,302,970		97,304,147		118,152,302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2,742,873,904		6,257,187,344		-4,999,508,377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125577711		0.265605493		-0.093336248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Allset 스마트베타 [주식]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7.12.23 - 2018.12.22	231	236	50	49	64	64	217	195
2016.12.23 - 2017.12.22	532	487	93	92	393	405	231	241
2015.12.23 - 2016.12.22	600	600	376	371	445	439	532	487

(주1) 2016.12.23 - 2017.12.2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378,517좌/385,746원

Allset 스마트베타 [주식]ClassA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7.12.23 - 2018.12.22	87	89	21	20	34	33	74	66
2016.12.23 - 2017.12.22	166	151	44	42	123	122	87	89
2015.12.23 - 2016.12.22	127	127	124	121	85	83	166	151

(주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일 경우 종류별로 작성하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은 주석사항으로 별도 표시한다.

Allset 스마트베타 [주식]ClassAe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7.12.23 - 2018.12.22	3	3	1	1	1	1	3	3
2016.12.23 - 2017.12.22	5	4	2	2	4	4	3	3
2015.12.23 - 2016.12.22	5	5	5	5	6	6	5	4

(주1) 2016.12.23 - 2017.12.2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349,937좌/358,563원

Allset 스마트베타 [주식]ClassC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7.12.23 - 2018.12.22	45	46	8	8	15	15	38	33
2016.12.23 - 2017.12.22	90	81	21	19	66	63	45	46
2015.12.23 - 2016.12.22	75	75	64	63	49	48	90	81

(주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일 경우 종류별로 작성하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은 주석사항으로 별도 표시한다.

Allset 스마트베타 [주식]ClassCe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7.12.23 - 2018.12.22	5	6	2	2	2	2	5	5
2016.12.23 - 2017.12.22	14	13	5	5	13	13	5	6
2015.12.23 - 2016.12.22	15	15	15	15	16	15	14	13

(주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일 경우 종류별로 작성하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은 주석사항으로 별도 표시한다.

Allset 스마트베타[주식]Class Ci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7.12.23 - 2018.12.22	57	58	0	0	0	0	57	51
2016.12.23 - 2017.12.22	205	187	0	0	149	155	57	58
2015.12.23 - 2016.12.22	230	230	34	34	59	59	205	187

(주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일 경우 종류별로 작성하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은 주석사항으로 별도 표시한다.

Allset 스마트베타 [주식]ClassCw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7.12.23 - 2018.12.22	0	0	0	0	0	0	0	0
2016.12.23 - 2017.12.22	7	7	12	11	19	19	0	0
2015.12.23 - 2016.12.22	150	147	14	13	157	150	7	7

(주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일 경우 종류별로 작성하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은 주석사항으로 별도 표시한다.

Allset 스마트베타 [주식]ClassS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7.12.23 - 2018.12.22	0	0	0	0	0	0	0	0
2016.12.23 - 2017.12.22	0	0	0	0	0	0	0	0
2015.12.23 - 2016.12.22	0	0	0	0	0	0	0	0

(주1) 2016.12.23 - 2017.12.2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6,559좌/27,183원

Allset 스마트베타 [주식]ClassC-P1(연금저축)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7.12.23 - 2018.12.22	27	27	3	3	5	5	25	22
2016.12.23 - 2017.12.22	38	34	7	7	18	18	27	27
2015.12.23 - 2016.12.22	19	19	26	26	8	8	38	34

(주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일 경우 종류별로 작성하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은 주석사항으로 별도 표시한다.

Allset 스마트베타 [주식]ClassC-P2(퇴직연금)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출자지분수)	금액	좌수(출자지분수)	금액	좌수(출자지분수)	금액	좌수(출자지분수)	금액
2017.12.23 - 2018.12.22	11	11	10	10	5	5	15	14
2016.12.23 - 2017.12.22	10	9	6	6	5	5	11	11
2015.12.23 - 2016.12.22	4	4	8	7	1	1	10	9

(주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일 경우 종류별로 작성하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은 주석사항으로 별도 표시한다.

Allset 스마트베타 증권투자신탁[주식] Class S-P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출자지분수)	금액	좌수(출자지분수)	금액	좌수(출자지분수)	금액	좌수(출자지분수)	금액
2017.12.23 - 2018.12.22	0	0	0	0	0	0	0	0

(주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일 경우 종류별로 작성하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은 주석사항으로 별도 표시한다.

Allset 스마트베타 증권투자신탁[주식] Class C-P1e(연금저축)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출자지분수)	금액	좌수(출자지분수)	금액	좌수(출자지분수)	금액	좌수(출자지분수)	금액
2017.12.23 - 2018.12.22	0	0	0	0	0	0	0	0
2016.12.23 - 2017.12.22	0	0	0	0	0	0	0	0

(주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일 경우 종류별로 작성하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은 주석사항으로 별도 표시한다.

Allset 스마트베타 증권투자신탁[주식] Class C-P2e(퇴직연금) [단위:억좌,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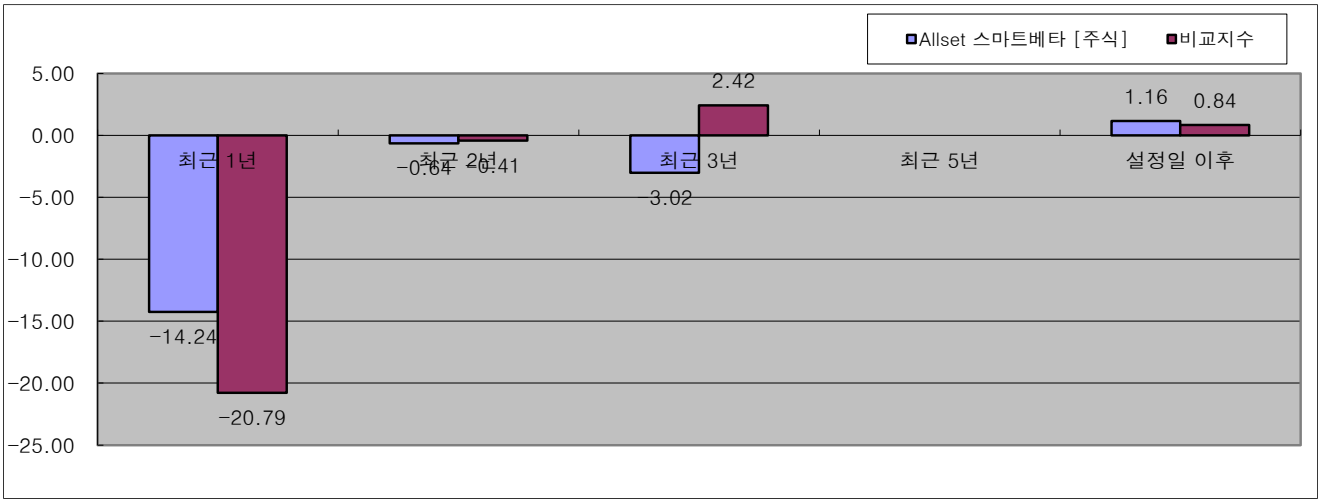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출자지분수)	금액	좌수(출자지분수)	금액	좌수(출자지분수)	금액	좌수(출자지분수)	금액
2017.12.23 - 2018.12.22	0	0	0	0	0	0	0	0
2016.12.23 - 2017.12.22	0	0	0	0	0	0	0	0

(주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일 경우 종류별로 작성하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은 주석사항으로 별도 표시한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기준)



[단위:%]

기간	최근 1년 18.01.03 ~ 19.01.02	최근 2년 17.01.03 ~ 19.01.02	최근 3년 16.01.03 ~ 19.01.02	최근 5년 -	설정일 이후 14.12.23 ~ 19.01.02
Allset 스마트베타 [주식]	-14.24	-0.64	-3.02		1.16
Allset 스마트베타 [주식]ClassA	-15.08	-1.61	-3.96		0.13
Allset 스마트베타 [주식]ClassAe	-14.91	-1.41	-3.77		0.32
Allset 스마트베타 [주식]ClassC	-15.59	-2.19	-4.54		-0.47
Allset 스마트베타 [주식]ClassCe	-15.17	-1.70	-4.06		-0.17
Allset 스마트베타[주식]Class Ci	-14.78	-1.26	-3.63		0.53
Allset 스마트베타 [주식]ClassCw	-14.73	-1.22	-3.58		-3.75
Allset 스마트베타 [주식]ClassS	-14.88	-1.38	-3.74		-0.67
Allset 스마트베타 [주식]ClassC-P1(연금저축)	-15.34	-1.90	-4.25		-0.16
Allset 스마트베타 [주식]ClassC-P2(퇴직연금)	-15.32	-1.88	-4.23		-1.30
Allset 스마트베타 증권투자신탁 [주식] Class S-P					-16.19
Allset 스마트베타 증권투자신탁 [주식] Class C-P1e(연금저축)	-15.03				-9.00
Allset 스마트베타 증권투자신탁 [주식] Class C-P2e(퇴직연금)	-15.02				-12.56
비교지수	-20.79				-2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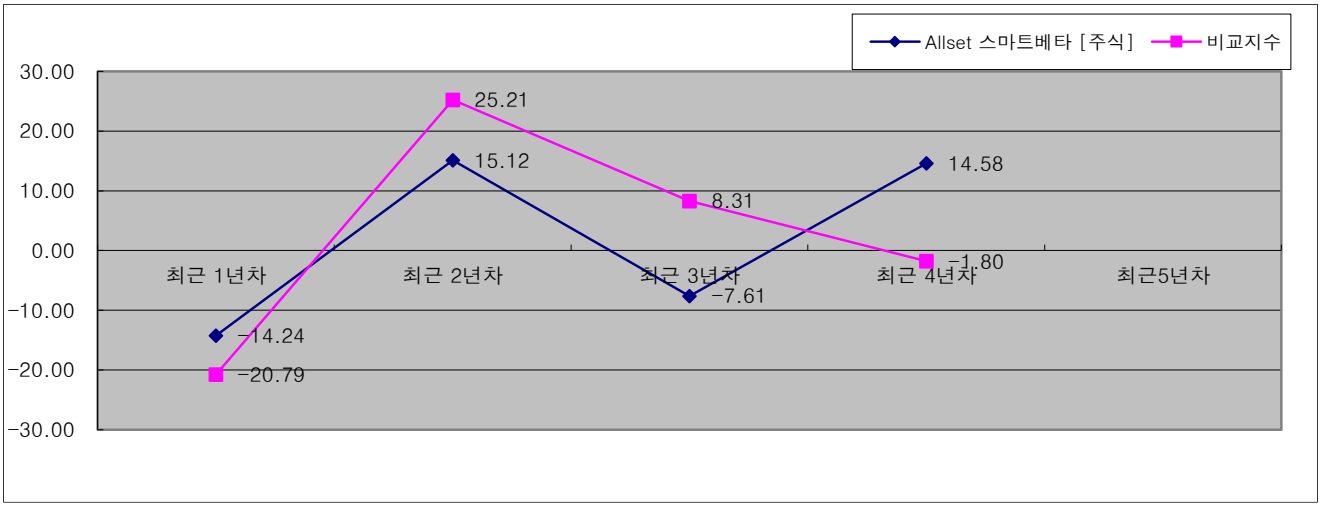
(주 1) 비교지수 : (1 * [KOSPI200])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단위:%]

기간	최근 1년차 18.01.03 ~ 19.01.02	최근 2년차 17.01.03 ~ 18.01.02	최근 3년차 16.01.03 ~ 17.01.02	최근 4년차 15.01.03 ~ 16.01.02	최근5년차 14.12.23 ~ 15.01.02
Allset 스마트베타 [주식]	-14.24	15.12	-7.61	14.58	
Allset 스마트베타 [주식]ClassA	-15.08	14.01	-8.51	13.47	
Allset 스마트베타 [주식]ClassAe	-14.91	14.24	-8.33	13.66	
Allset 스마트베타 [주식]ClassC	-15.59	13.33	-9.06	12.80	
Allset 스마트베타 [주식]ClassCe	-15.17	13.90	-8.60	12.45	
Allset 스마트베타[주식]Class Ci	-14.78	14.41	-8.19	13.87	
Allset 스마트베타 [주식]ClassCw	-14.73	14.44	-8.13		
Allset 스마트베타 [주식]ClassS	-14.88	14.27	-8.30	9.20	
Allset 스마트베타 [주식]ClassC-P1(연금저축)	-15.34	13.67	-8.79	13.17	
Allset 스마트베타 [주식]ClassC-P2(퇴직연금)	-15.32	13.69	-8.77	8.15	
Allset 스마트베타 증권투자신탁 [주식] Class S-P	-16.19				
Allset 스마트베타 증권투자신탁 [주식] Class C-P1e(연금저축)	-15.03				
Allset 스마트베타 증권투자신탁 [주식] Class C-P2e(퇴직연금)	-15.02				
비교지수	-20.79				

(주 1) 비교지수 : (1 * [KOSPI200])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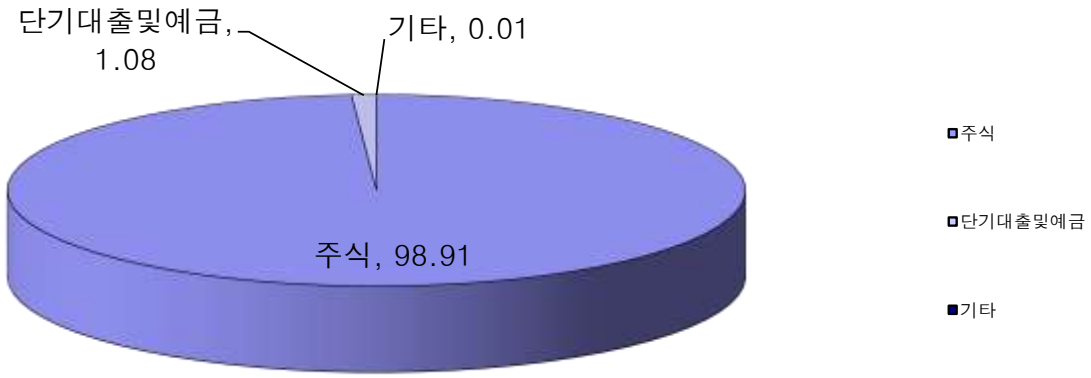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고 1 년 미만인 경우(예:8 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고 1 년 미만인 경우(예:8 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 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2018.12.22 현재 / 단위 : 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193	0	0	0	0	0	0	0	0	2	0	195
	(98.9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8)	(0.01)	(100.00)
합계	193	0	0	0	0	0	0	0	0	2	0	195
	(98.9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8)	(0.01)	(100.00)

(주 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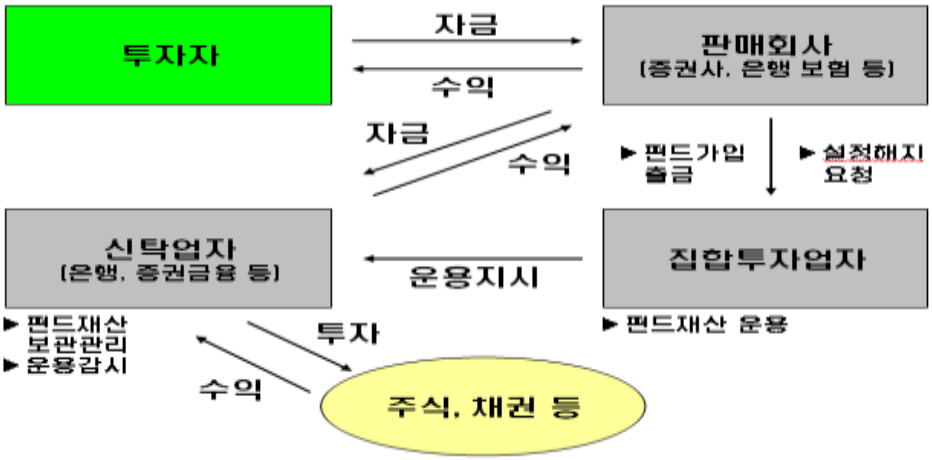
(주 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 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 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와 투자자 및 집합투자기구간의 관계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NH-Amundi 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 길 2 (여의도동, 농협문화복지재단빌딩 10 층) 연락처 : 02-368-3600 (www.nh-amundi.com)	
회사연혁	2002.04	농협과 CAAM 간 자산운용회사 설립에 관한 MOU 체결
	2003.01	법인설립 (자본금 300 억, 농협 60%, CAAM 40%)
	2003.03	금감위로부터 투신업 본허가 취득
	2003.08	자문업 등록
	2003.10	투자일임업 등록
	2004.05	Asian Investor 로부터 2004 한국 최우수 운용사 선정
	2005.03	Asia Asset Management 로부터 2004 한국 최우수 신상품상 수상
	2006.09	국민연금 SRI 펀드 운용사로 선정
	2009.02	"라틴아메리카 포르테" 제로인 Best 펀드 선정
	2009.10	CAAM 홍콩/싱가포르에서 운용하고 있는 한국주식 투자펀드에 대한 투자자문 계약 체결
	2010.01	CAAM 의 모회사인 Credit Agricole 그룹이 Societe Generale 그룹과 75 : 25 의 비율로 결합하여 AMUNDI 로 재출범
	2010.01	"1.5 배 레버리지 인덱스" 금융감독원선정 2009 년 최우수 금융신상품상 수상 "2010 년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중앙일보 주최) "사회책임경영부문" 대상 수상
	2010.03	"1.5 배 레버리지 인덱스" 제 15 회 매경 금융상품대상 은상 수상
	2010.03	헤럴드경제 선정 인도네시아포커스 펀드 헤럴드경제 펀드대상 최우수 해외펀드상 수상
	2010.11	Asian Investor 지 선정 Korea Award 최우수 사회책임투자펀드상 수상
	2012.03	농협금융지주 출범 제로인 선정 2014 대한민국 펀드 어워드 투자자보호 최우수상 수상
	2014.02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 주최 2014 고객사랑브랜드대상 자산운용부문 수상
	2014.05	Asian Investor 지 선정 2014 Korea Award 사회책임투자부문/채권운용부문 수상
	2014.05	NH-CA 자산운용에서 NH-Amundi 자산운용으로 사명 변경
	2016.05	아시안인베스터 '국내중소형주 최우수운용사' 수상
	2016.06	대한민국 증권대상 '올해의 펀드매니저 및 리스크 관리부문 최우수상'

	2016.11	수상(서울경제) 헤럴드 펀드대상 '최우수 국내 펀드-일반성장형, 중소형, 채권형' 부문 수상 대한민국 펀드대상 '퇴직연금 베스트 펀드' 수상(머니투데이)
	2016.12	매일경제 증권대상 '국내주식형 베스트' 수상
	2017.02	Morningstar Awards '중소형주식 부문 펀드상' 수상
	2017.03	Amundi 의 Pioneer(파이오니어) 인수
	2017.07	서울경제 대한민국 증권대상 '국내펀드부문 최우수상' 수상
	2017.11	헤럴드 펀드대상 '최우수 국내 펀드-고배당주, 중소형주' 부문 수상
	2017.12	대한민국 펀드대상 '올해의 혁신 펀드-글로벌후순위채' 수상(머니투데이)
자본금	400 억	
주요주주	농협 70%, Amundi 30%	

나. 주요 업무

▣ 집합투자업자 업무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합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의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며, 위탁에 따른 수수료는 동 투자신탁에서 부담합니다.

▣ 집합투자업자의 선관의무 등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 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②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계산으로 행한 법률행위로부터 발행한 제비용 및 보수를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③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의 채무를 수익자의 명의로 부담하게 하거나 집합투자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수 없습니다.

④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채권은 그 집합투자업자의 당해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 집합투자업자의 책임

①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법령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이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이를 판매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 등과 관련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게 되며, 그 보수는 집합투자재산이 부담하게 됩니다. 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신한아이타스㈜**에 위탁하였습니다. 업무의 위탁에 대한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 있습니다.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백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항 목	'17. 12말	'16. 12말	항 목	'17. 12말	'16. 12말
현금 및 예치금	91,465	91,940	영업수익	41,192	38,579
유가증권	3,074	1,856	영업비용	23,536	19,719
유형자산	500	711	영업이익	17,656	18,859
기타자산	9,312	9,308	영업외수익	42	29
자산총계	104,351	103,817	영업외비용	166	164
예수부채	-	-	법인세	4,010	4,237
기타부채	7,795	6,827	당기순이익	13,523	14,487
부채총계	7,795	6,827			
자본금	40,000	40,000			
이익잉여금	56,512	56,988			
자본총계	96,556	96,989			

라. 운용자산 규모

[2019.01.02 현재 / 단위 :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및부동산파생	특별자산및특별자산파생	혼합자산및혼합자산파생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수탁고	21,924	32,413	10,057	0	5,163	35,992	0	6,185	21,623	382	70,555	204,293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업자에 관한 사항

(1) 회사 개요

회사명	국민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02-2073-5135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kbstar.com

(2) 주요 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의무와 책임

[의 무]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책 임]

-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 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개요

회사명	신한아이타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 02-2180-0418
회사연혁 등(홈페이지 참조)	www.shinhanaitas.com

(2) 주요업무

-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3) 의무

-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KIS채권평가	한국자산평가	NICE피앤아이	에프엔자산평가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88 삼환빌딩 4층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29
연락처	02-3215-1400	02-399-3350	02-398-3900	02-721-5300
설립일	2000. 6. 20.	2000. 5. 29	2000. 6. 16	2011. 6. 9
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bond.co.kr	www.koreaap.com	www.nicepricing.co.kr	www.fnpricing.com

(2) 주요업무

-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총회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 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총회의 소집통지는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 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 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 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 주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자본시장법 제 190 조제 5 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이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1) 투자신탁의 종류(법 제 229 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2)-1.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법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합병·분할·분할합병
   나. 법 제 420 조제 3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다.「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 10 조제 1 항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4) 환매금지형투자신탁(존속기간을 정한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5)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6)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투자신탁의 합병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으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작성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약관·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주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의 주체]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 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 135 조 제 2 항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협회에서 열람·복사하거나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의 합병,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의 전환, 투자신탁의 존속 등 이 투자신탁의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되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가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15억 미만인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신탁계약서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 투자신탁이 최초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임의해지되거나,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신탁계약서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상기 방법 이외에도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다른 집합투자기구와 합병하는 방법 또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하는 방법 등으로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3) 법 제 87 조제 8 항제 1 호・제 2 호에 따라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 및 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회계감사]

가.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88 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①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 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 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②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설정일 또는 성립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③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④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인 매매회전율
  ⑤ 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②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 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③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 개월마다 1 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④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②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③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 내용
④ 법제 247 조제 5 항 각 호의 사항
⑤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사항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수탁회사·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 총회를 거치는 경우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시행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관련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 123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설립 이후 1 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1 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원본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11) 그 밖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법 제 9 조 제 15 항 제 3 호 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 87 조 제 7 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법 제 9 조 제 15 항 제 3 호 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제 87 조제 7 항에 따른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 월 30 일까지 직전 연도 4 월 1 일부터 1 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위험지표의 공시: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이해관계인		거래의 종류	자산의 종류	거래 금액
성명(상호)	관 계			
NH투자증권	계열회사	위탁거래	주식	5,800

※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시행령 제 84 조)
1.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2.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와 그 배우자
3.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4.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100 분의 30 이상 판매·위탁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관에서 "관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라 한다)
5.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국가재정법」 제 81 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은 제외한다)의 100 분의 30 이상을 보관·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

6.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구분	내용
투자증권거래	1) 선정시 고려사항 - 운용지시가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 중개회사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기구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2) 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 - 특정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되어 사용될 것 -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음 -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 [매매대가 이익이 제공될 수 없는 방법] ① 회사 경영관련 비용 ②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③ 마케팅 비용 ④ 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 등) ⑤ 운용전문인력은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증권 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됨
장내파생상품거래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주) 매매대가 이익 :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중개회사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해당사항 없습니다.

용 어 풀 이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름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여 사모 펀드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